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

공급망 실사 대응과 윤리경영

2023 August

Vol. 128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준법경영

법무법인 지평 정영일 그룹장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 사례

공급망 뇌물 및 부패 관리

- 광물분야 공급망을 중심으로

공급망 반부패 실사 및 평가 대응

먹거리 공급사슬의 실체

‘부패의 맛(Rotten)’



COVER STORY

6월 1일 유럽의회에서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는 공급망(value chain)의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 및 폐기 단계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제거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실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EU집행위는 구체화된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예정이며, EU회원국은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EU지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 호차에서는 공급망 실사 관련 동향(가이드라인, 사례 등)을 청렴윤리경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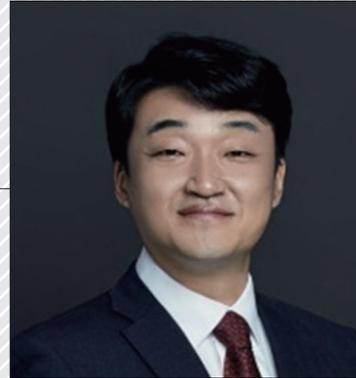
01	전문가 코칭	04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준법경영 법무법인 지평 정영일 그룹장	
02	사례돌보기	07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 사례	
03	보고서리뷰	13
	공급망 뇌물 및 부패 관리 - 광물분야 공급망을 중심으로 OECD (20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to addres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in mineral supply chains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9
	공급망 반부패 실사 및 평가 대응	
05	문화 속 기업윤리	22
	먹거리 공급사슬의 실체 '부패의 맛(Rotten)'	
06	뉴스클립	2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6
	공급망으로 윤리경영 확산	
08	행사소식	27
09	퀴즈	28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준법경영

전문가 코칭

정영일 그룹장
법무법인 지평



이번 호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정영일 그룹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기업이 유의할 사항, 기업들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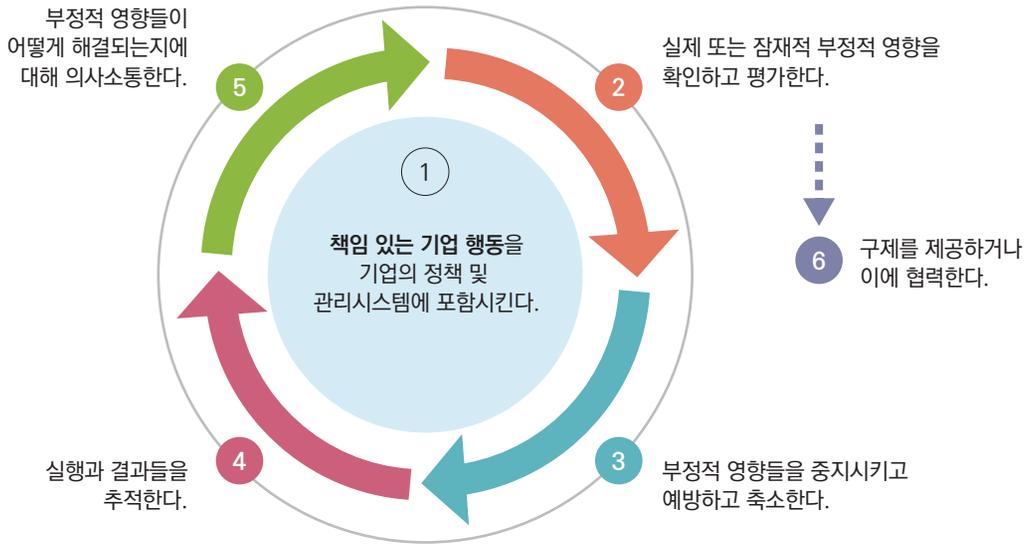
Q1) EU 공급망 실사법 의무화로 기업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하여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측면에서의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U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에게 자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을 대상으로 실사를 의무화한 법률이다. 여기서 실사(Due Diligence)는 재고실사나 M&A실사와 같이 단순히 무엇인가를 점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사는 기업이 발생시키고 있거나 향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업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이 바로 '실사'라는 방법론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UN이나 OECD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해 왔던 것들을 EU가 구체적인 경성법(Hard Law)으로 제정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실사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OECD 실사 지침에 따르면 '실사'는 '개별기업이 자사의 운영은 물론 자사가 관여된 공급망과 사업관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EU는 이 정의를 그대로 법안에 반영했다.

〈그림. 실사(Due Diligence) 체계〉



출처: OECD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SG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관리로 치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 영향을 줄이고 긍정 영향을 극대화하라는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영향 관리 책임의 범위는 공급망을 포함하여 가치사슬로 수렴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포함해서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준법윤리경영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준법윤리경영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그리고 관리방법에 주는 함의가 크다. 실사는 해외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 내에서는 크게 부각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영향 관리'로서의 실사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준법윤리경영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 정의하고, 한국 사회에 그 중요성에 대한 환기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Q2)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기업들은 실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정 영향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부터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를 정기화하고, 영향 평가에 기반해 예방·완화 조치, 모니터링 체계 수립, 내·외부 보고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정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충처리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EU는 조직이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부정 영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EU가 제시하는 부정 영향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환경법규화 되어 있는 것들이다. 즉, 관련 국내법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부정 영향과 사실관계 여부, 그리고 실사 체계에 대한 정보 요구가 급증하게 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의 대상은 EU기업들과 함께 특정 조건 이상의 비 EU권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글로벌 공급망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별로 공급망의 특징이 다르고, 공급망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외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법의 대응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이 아니라 동종업계 및 산업계, 아님 지역별 기업들의 공동대응에 관심을 갖고, 그 특성을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 사례

사례돌보기

EU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무화되면서, EU지역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까지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2023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 '유럽연합(EU)발 공급망 실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공급망 내의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경영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등 글로벌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도 공급망을 관리하면서 실사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IT분야 리서치사인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공급망 관리 우수 기업들을 위주로 사례를 소개하여 향후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LG전자

LG전자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윤리규범'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윤리규범은 이해관계자를 고객, 경쟁사, 협력사, 국가와 사회로 나누어서 책임을 설명하며, 협력사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거래절차,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LG전자는 규범 차원의 실천을 넘어 준법경영 체계구축과 이행을 위해 국제표준인 ISO37301¹⁾인증을 2022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LG전자는 전자 차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각 사업장의 부패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수준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망에서의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며, 협력사에 리스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Th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²⁾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과 함께 기업윤리 항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리스크 항목을

1) 조직이 수행해야할 준수 의무를 식별하고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책임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수립, 개발, 실행, 평가, 유지,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국제표준.

2) 舊 전자산업시민연대(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EICC)로 시작되었으며, 전자산업의 공급망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기업간 협의체.

점검하고, 협력사가 주도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CSR리스크 관리는 대상선정(step 1), 자가점검(step 2), 현장점검(step 3), 제3자 ESG경영관리 적합성 심사(step 4)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활동을 점검하는 모니터링(step 5)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LG전자의 협력사 CSR 리스크 점검 및 관리 방식〉

구분	세부 내용
자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횟수) 매년 1회 협력사 자가점검 실시 • (기준) 국제 기준을 반영한 LG전자 자체개발 심층 자가점검 평가시트 활용 • (대상) 1차 협력사 주도로 2차 협력사 자가점검 실시
현장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 고위험 협력사/주요 구매 협력사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개선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및 CSR 관리 시스템 등록 • 부적합 사항에 따라 즉시개선 또는 협력사의 수립 계획에 따라 개선현황 모니터링 실시

출처: 2021-2022 LG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21년 기준, LG전자의 1차 협력사 2,409개 중 자가점검을 실시한 기업은 1,289개사였으며, 13개 기업이 고위험 협력사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약 8% 감소한 것으로, 모든 협력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발견된 부적합 사례를 개선하도록 하여 100% 개선과제 이행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처럼 LG전자는 확인된 부적합 이슈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관리함으로써 고위험 협력사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1차 협력사의 주도 하에 하위 협력사 리스크까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펩시코(PEPSI.Co)

미국의 식품 제조업 회사인 펩시코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3년 공급망 관리 상위 25위' 중 5위에 선정되었다. 펩시코는 글로벌 공급망 행동 강령을 통해 사업 청렴성 및 부패 방지, 노동 관행, 건강 및 안전, 환경 관리 분야에서 공급업체에 대한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펩시코와 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총 16개의 해당 행동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펩시코의 글로벌 공급망 행동 강령〉

원칙1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인식하고 준수한다.
원칙2	모든 직원 및 파트너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원칙3	비즈니스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원칙4	다양성을 장려하고, 차별, 괴롭힘 없는 직장을 제공한다.
원칙5	급여, 근무 시간 및 복리후생에 관해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한다.
원칙6	모든 형태의 강제적인 노동을 금지한다.
원칙7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
원칙8	직원이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를 보장한다.
원칙9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원칙10	환경을 생각하며, 모든 환경법을 준수한다.
원칙11	펩시코에 제출된 정확한 재무관리 기록을 유지한다.
원칙12	품질 및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한다.
원칙13	펩시코가 요청하는 합리적 평가 프로세스에 협력하며, 펩시코는 공급업체 강령 준수를 지원한다.
원칙14	거래 시 선물 및 접대와 이해충돌에 관한 펩시코의 정책을 준수한다.
원칙15	모든 토지 취득(임대 및 활용 포함)은 국제금융공사 표준을 따른다.
원칙16	강령 위반 의심 시 보고한다.

출처: 2023 펩시코 Global Supplier Code of Conduct

펩시코는 자유 기업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모든 형태의 공공 부문 또는 상업적 뇌물 수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펩시코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공급업체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현지에서 적용되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펩시코의 글로벌 뇌물수수 금지 준수 정책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2021년 9월에 개정된 펩시코의 글로벌 뇌물수수 금지 준수 정책은 다음과 같다.

〈펩시코의 글로벌 뇌물수수 금지 준수 정책 중 일부〉

구분	세부내용
뇌물 및 급행료	<p>관련 공급업체는 뇌물이나 급행료(Facilitating Payment)³⁾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p> <p>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모든 뇌물 및 요구(실제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는 즉시 현지 준법 및 윤리 담당자 또는 현지 법무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p>
제3자 관련 뇌물수수 위험	<p>펩시코는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뇌물을 금지하고, 펩시코를 대신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제3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제3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된다.</p>
반부패 위험 실사	<p>펩시코에는 제3자 위험 기반 반부패 실사 프로그램(Risk-Based Anticorruption Due Diligence Program)을 운영하며,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펩시코는 그 절차에 철저히 관여할 수 없다.</p>

출처: 2021 펩시코 GLOBAL ANTI-BRIBERY COMPLIANCE POLICY

이처럼 펩시코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또한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평판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경찰 관련 업무, 우편 서비스 제공, 비자 처리, 상품 통관 또는 전화 서비스와 같은 유틸리티 제공과 같이 비재량적 조치 또는 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3. P&G (The Procter & Gamble Company)

P&G는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용품 제조업체이다. P&G의 비즈니스 목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전 세계 소비자의 삶을 개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P&G의 원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원칙 7(P&G는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은 고객 및 공급업체와 긴밀하고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을 통해 P&G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정직성을 알 수 있다.

〈P&G가 중시하는 원칙〉

원칙1	P&G는 모든 개인을 존중합니다.
원칙2	회사와 개인의 이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원칙3	P&G는 업무에 전략적으로 집중합니다.
원칙4	혁신은 P&G에게 있어 성공의 초석입니다.
원칙5	P&G는 숙달을 중시합니다.
원칙6	P&G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칙7	P&G는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칙8	상호 의존성은 삶의 방식입니다.

출처: P&G 홈페이지

P&G는 법률 준수, 인권,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등을 다룬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따라야 할 글로벌 표준을 제시한다. P&G는 공급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며, 공급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거래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P&G의 공급업체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 기업 내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방지를 위해 P&G와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 접대 또는 기타 사례금을 받거나 주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또한 공무원에게 업무 관련으로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P&G는 공급업체가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청렴함을 유지하며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P&G는 공급망 지속가능성 감사를 통해 운영 및 사업 수행 방식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제3자 툴로써 공급망 ESG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SMETA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P&G는 공급업체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의 신속한 개선이나 감사 사이클에 따른 지속적 개선을 요구한다.

P&G는 공급업체가 반부패·윤리경영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협력사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외에도 웹진형태로 제공한다. 그 내용으로는 (1)P&G의 가치와 원칙, (2)공급업체에게 기대하는 바와 책임, (3)근무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4)건의사항 등이 있으며, 이해를 돕도록 이미지와 함께 설명한다. 그 외에도 2021년 4월, 1,500명 이상의 공급업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글로벌 가상 공급업체 행사’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규정과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P&G는 공급망 차원의 청렴한 비즈니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P&G의 ‘공급업체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중 일부〉



출처: P&G Responsible Sourcing Expectations for External Business Partners

참고

- 전국경제인연합회(2022.11.24), 글로벌인사이트 95호.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 지디넷코리아, “EU발 공급망 ESG 실사에 불안감” (2023.02.05) <https://zdnnet.co.kr/view/?no=20230205101931>
- LG전자, 2021-2022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FACT BOOK
- 아이뉴스24, “LG전자,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2022.11.20), <https://www.inews24.com/view/1530357>
- Gartner, Gartner Supply Chain Top 25 for 2023(2023) <https://emtemp.gcom.cloud/ngw/globalassets/en/supply-chain/documents/gartner-supply-chain-top-25-for-2023.pdf>
- PepsiCo, 2023 PepsiCo Global Supplier Code of Conduct
- PepsiCo, 2021 PepsiCo global anti-bribery compliance policy
- P&G, P&G EXTERNAL business partner (EBP) stewardship overview
- P&G, P&G Worldwide Business Conduct Manual
- P&G, P&G Responsible Sourcing Static Document
- P&G, Responsible sourcing expectations for external business partners <https://storage.net-fs.com/hosting/7605079/0/>



보고서리뷰

공급망 뇌물 및 부패 관리 - 광물분야 공급망을 중심으로 -

■ 보고서: OECD (20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to addres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In mineral supply chains



OECD가 2021년 발간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to addres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In mineral supply chains” 보고서는 광물 공급망에서 부패 및 뇌물 리스크의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OECD의 광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또는 기타 표준 등 기존의 권장사항들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업 부문의 부패는 경제적 영향을 넘어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치며 종종 심각한 인권 유린과 환경 및 노동 의무 이행 부족을 조장한다. 최근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도 ‘지리 및 산업별 위험요인’ 및 ‘분쟁 지역에서의 실사 이행 방법’ 등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FAQ를 이행단계별로 살펴보고 광물산업 외에도 타 산업 기업에 적용 가능한 공급망 부패 실사 및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물산업의 구조와 실사

공급망의 모든 행위자는 거래를 통해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실사를 통해,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급망에 대해서도 부패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해야 한다. 공급망 단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실사는 공급망 단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업스트림 (upst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방산업으로도 불리며 기업의 영업활동 가운데 제품과 용역생산의 첫 단계에서의 활동 또는 수익을 지칭 - 광물산업 예: 광부, 상인, 정제소 및 제련소 단계까지
다운스트림 (downst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으로도 불리며 제품을 생산하고 최종 판매하는 단계를 지칭 - 광물산업 예: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제조업체-최종 제품 판매 기업

Q. 공급망 실사 맥락에서 뇌물 및 부패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패 중 하나로 뇌물수수를 꼽는다. 광물 지침의 공급망 정책 샘플에는 회사가 뇌물을 제안, 약속, 제공 또는 요구하지 않으며, 타인의 뇌물 권유에는 거절할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 있다. 뇌물수수와 부패 외에도 부패 관련 용어로는 사소한 부패, 급행료, B2B부패⁴⁾ 등이 있다.

〈부패 관련 용어〉

사소한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 현장, 광물 운송 경로, 보안 검문소, 거래소, 공항 및 항구와 같은 장소에서 종종 일어나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의미
급행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일상적 행정처리(예: 전기 공급, 허가 처리속도 향상 등)를 빠르게 하도록 지불하는 소액의 뇌물. -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법에 급행료까지 적용하고 있다. 일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도, 기업은 급행료를 회사의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B2B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뇌물수수로, 조달 프로세스(물류, 운송, 통관 또는 대규모 광업의 보안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발생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ary AZ

4)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 B2B의 '2'는 영어에서 'to'와 발음이 같은 숫자를 차용한 것이며 기업간에 이뤄지는 상거래를 의미.

Q. 공급망의 부패위험을 식별 및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의 부패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급망에서 부패 또는 뇌물 혐의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내 시스템이 법적 제재를 방어 또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요소로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직원 행동강령, 정기적인 윤리 및 규정준수 위험평가, 교육 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내부고발자 제도와 제도의 정기적 검토, 실사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공급망 내 부패위험은 윤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 준수 문제이기도 하므로 부패 위험을 해결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여러 부서와 모든 직급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Q. 회사는 공급업체의 효과적인 반부패 관리 시스템 구축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또한 공급업체가 효과적인 반부패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다음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다. 먼저, 계약 전 공급업체 부패 실사 시스템을 평가해야 한다(예: 강점 평가, 시스템 범위 확인, 부패 위험 처리 방법, 실사 수행에 사용가능한 자원의 보유 여부 평가). 만약, 계약 전 평가에서 부패위험이 식별되었다면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명시해야 한다. 공급업체와 계약 시 부패방지 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모델 조항 초안을 참고할 수 있고, 공급업체의 행동 강령, 계약서 또는 기타 유형의 서면계약에 부패방지 정책 및 조항을 통합하여 부패관행에 대한 무관용과 이것이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공급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행동강령 채택 요청은 2, 3차 공급업체에까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Q. 회사의 여러 공급업체의 부패 관련 위험 평가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공급망의 부패 조사의 범위는 부패 위험도, 거래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p>위험기반 접근법</p>	<p>보고서는 부패위험 실시 시 ‘위험 기반 접근법’ 사용을 권장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취약한 부분, 고위험 시나리오⁵⁾를 파악하고, 해당 부분 및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p> <p>(광물산업 예시) 공급망 내 부패에 취약한 부분은 업스트림(광산~정제소까지)에서</p> <p>① 계약 및 라이선스 수여, ② 영향권 내 커뮤니티의 동의 및 보상, ③추출, 생산 및 거래, ④ 세금, 수수료 로열티 등 지불금 납부하는 상황들이 꼽힌다.</p>
<p>규모별 접근법</p>	<p>기업은 부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도 실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p> <p>(광물산업 예시) 광물산업은 채광 규모에 따라 부패 위험을 살펴보고 있다.</p> <p>① 대규모 채광: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더 큰 금액과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부패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p> <p>② 영세, 소규모 채광: 고위험 지역에서 사소한 부패, 청탁, 성적 착취 및 갈취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규제의 회색지대인 경우가 많은데, 금융수준이 낮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거래가 기록되지 않거나 복잡한 결제 구조를 가지는 비공식성이 높게 나타난다.</p>

Q. 직접 공급업체와 관련된 부패위험이 식별된 경우, 위험을 어떻게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까요?

직접 공급업체가 고위험에 노출된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업별로 맞춤형 완화조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패위험에 대한 혐의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법률자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정보수집, 계약상 감사권한에 기반한 직원 인터뷰 및 정보공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영향력이 부족할 시에는 타 기업, 산업 협회, 기타 이해관계자와 집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려사항의 발생 자체만으로 사업에서의 즉각적인 철수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공급업체가 위험관리계획을 도입하지 않고, 6개월 후에도 위험이 완화되지 않을 때 해당 공급업체와의 계약중단이나 관계단절을 고려해야 한다.

5) 기업의 운영이 다음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면 기업은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패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적 위치,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거나 반부패 시행 이력이 없는 산업 하위 부문, 부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정보공개가 불투명한 공급업체, 정치적 주요인물(PEP)

Q. 간접 공급업체의 부패혐의에 대해 부패방지 및 완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험이 식별되는 즉시 완화·예방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간접 공급업체에서의 부패 위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따라 조치가 조정되어야 한다. 대형 제조업체라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 떨어져 있는 공급망에도 영향력을 지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들로 부패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① 계단식 계약 조항: 실사 및 청렴성에 대한 기대치가 포함된 계단식 계약서 조항을 통해 공급망의 여러 계층에 걸쳐 공급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산업 간 협력: 부패 위험과 관련된 공급업체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회사의 구매력이 제한적일 때 타기업, 산업협회, 다중 이해관계자 그룹 등과 협력하여 부패 문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 ③ 투자 및 재정적 압력: 투자자 및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공급업체에서 특정 반부패 문제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촉구하여 회사의 행동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Q. 공급업체가 사소한 부패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업체가 '사소한 부패' 등 공무원의 뇌물 청탁에 노출된 경우, 뇌물 제공을 거부하고 공급업체는 즉시 영업국이나 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련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가능하다면 고충 처리 메커니즘 및 현지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특히 공공 조달의 경우 본국의 외교 대표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B2B부패'의 경우 기업은 최상위 업스트림의 잠재적 부패위험부터 해결해야 한다. 광물 공급망을 예로 들자면 영세광부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공개 의무화, 소규모 채광 협동조합의 역량 구축 등을 공급 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 모든 비공식 지급 등을 기록하고,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해야 한다. 개선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완화 노력을 문서로 보존하여 감사인 또는 법 집행기관에 공개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Q. 회사는 지역사회와의 관습적 지도자에 대한 지불 관행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현지 관행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에게 지불, 선물, 음식 지원 또는 기타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그러한 요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의 관행과 상관 없이 뇌물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면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고, 국가 당국의 합법적인 승인을 얻을 때까지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불법지불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면, 회사는 완화 조치를 하면서 공급업체와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광물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위험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6개월 이내에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회사는 최소 3개월 동안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해야 한다.

Q. 회사의 식별된 공급망 부패위험과 부패 방지 실사 정보를 연례 실사 보고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 실사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위험평가 결과 및 해결조치: 식별된 위험 해결을 위해 시행된 조치, 위험평가의 주요 결과에 대한 세부정보
- ② 개선 계획: 합의된 개선 계획, 점진적 개선을 평가하는 기준, 성과 추적, 중대하고 측정가능한 개선 계획(직원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지침의 적용도와 손쉬운 액세스, 내부 고발(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포함)
- ③ 잔존 위험 관리: 완화 조치 이후에도 잔존하는 위험을 ‘뇌물 및 부패방지 프레임워크 구현 계획’에 포함

많은 국가에서 기업의 반부패 및 뇌물금지 프레임워크(정책 및 절차 포함)의 이행은 부패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방어 또는 처벌완화 요소로 사용된다. 사전의 정기적인 실사 및 공급업체 참여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부패위험 관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일상적인 기업경영에 통합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 OECD (2021), Frequently Asked Questions: How to address bribery and corruption risks In mineral supply chains
- 매거진 환경, "광물은 미래 먹거리, 자원 개발 등 지원 절실" (2023.06.29)
-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 (검색일: 2023.07.2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02&cid=43659&categoryId=43659>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Mineral Supply Chains | <https://www.duediligenceguidance.org/#>
- 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ARY A-Z | <https://www.transparency.org/en/corruptionary>



공급망 반부패 실사 및 평가 대응

행동하는
윤리경영

EU는 공급망 내 기업들의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위험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현장 조사 등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2023.06)을 마련하여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 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과 ESG 경영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ESG경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행동규범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돕고자 제작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기업이 공급망 관련 실사 및 평가에 대응 시 거버넌스 또는 반부패 윤리경영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윤리경영 진단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RBA와 같은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의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2022년 발표하였다. 이는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 위한 핵심 지표를 공유하고 실제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진단 및 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은 기초 및 심화항목으로 구분되며, 기업들은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실사 및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부패, 윤리경영 투명성 등은 심화항목⁶⁾의 ‘지배구조-윤리경영 범주’에 포함되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세부항목은 총 6가지로 (1)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2)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3)반경쟁 행위 예방조치, (4)공익제보자 보호, (5)정보공개 투명성, (6)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정보공개 투명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항목은 RBA 행동강령에는 없는 내용이거나 차이가 있어 여러 표준 또는 법적 제도 등을 참고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윤리경영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항목의 점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 기초항목은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에 필요한 최소 항목을 담고있다. 심화 진단항목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항목 뿐 아니라 공급망 ESG 진단/실사의 전반적 대응을 위한 항목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표를 종합하여 구성되었으며 ESG 경영정책 및 확산에 활용되는 지표 또는 국제표준, 인증 등에 활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넓은 범위의 심화 진단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윤리경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기업 주가, 매출액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점검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요건1. 경영자가 윤리경영 의지를 발표한 경우
- 요건2.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범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 등의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준법 및 윤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윤리경영 방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요건1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윤리 경영 헌장/규범/방침을 제작할 때 경우에는 국내외 윤리경영 이슈들을 파악하면 구체적인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제도 뿐만 아니라 산업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능성 있는 이슈 또한 조사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국내외 동종 산업 기업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헌장 및 실천 서약 등의 자료 또한 참고해 볼 수 있다.

2) 비윤리 행위 예방조치

비윤리 행위 유형으로는 부패, 횡령, 갑질, 뇌물수수, 사기 및 도용, 채용 비리, 자금세탁,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속한 산업과 환경에 따라 이슈가 될 수 있는 비윤리 행위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 요건2.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3. 비윤리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요건4. 비윤리 행위 발생 시 징계 등 조치 및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비윤리 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비윤리 행위 관련된 내부 기준을 설정할 때 기업은 비윤리 행위 관련 법규(예: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1977), OECD 부패방지협약(199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 UN 반부패협약(20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등) 및 국제인증 항목을 고려하여 기업의 내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3) 공익제보자 보호

기업은 공익제보의 채널 및 제보자 보호 체계를 갖추어 공익 개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당해서는 안 됨을 적시하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를 참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공익신고 사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요건1.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공익제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를 모두 수용하며, 각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 요건3. 공익제보 접수 시 진위를 실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공익제보의 진위가 가려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공익제보 접수 순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제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4)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윤리규범 위반이란 사회통념적 윤리기준과 조직이 제정한 윤리규범에서 다루는 행동방식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이해관계 상충 행위, 공정거래 미준수 행위, 중요정보 관리 위반 행위, 괴롭힘 및 차별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경쟁 행위, 내부정보 무단 활용 행위, 직무권한 및 지위 남용, 자금세탁방지 위반 및 기타 반환경적/반사회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요건1. 윤리규범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2. 윤리규범을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3.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한 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구성원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5. 윤리규범 위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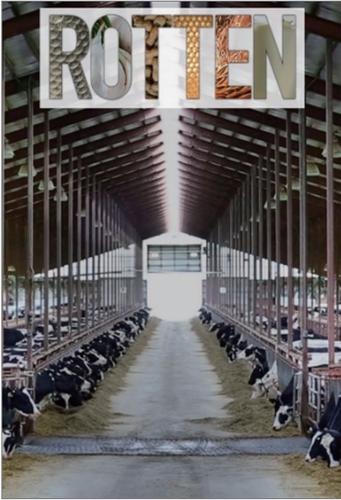
참고

- RBA(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2021)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2022.12)
- 뉴시스,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수출 기업 범정부 지원’”(2023.05.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77941?sid=101>



문화 속
기업윤리

먹거리 공급사슬의 실체, 다큐멘터리 ‘부패의 맛(Rotten)’



*이미지출처: 넷플릭스(NETFLIX)

치솟는 생산비용,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식품산업의 공급망은 더욱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섭취하는 음식이 어디서 생산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공되었는지에 대하여 소비자는 점점 투명한 정보를 요구한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부패의 맛(Rotten)’은 꿀, 견과류, 마늘, 닭, 우유, 대구 등의 식품 공급망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부패를 다루고 있다.

마늘산업을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요리 프로그램 덕분에 마늘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다. 마늘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서 값싼 중국산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하게 된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모든 마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저렴한 중국산 마늘이 수입되면서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반덤핑 과세’를 외국기업에 부과한다. 반덤핑 과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혐의가 있는 기업에게 과세를 하는 것인데, 중국의 ‘하모니 국제 향식료 주식회사’가 매년

1억 달러의 마늘을 미국에 유통하고 있음에도 12년간 과세 적용을 피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과세의 대상은 상무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 결정이 된다. 마늘산업은 ‘신선한 마늘생산자 협회(FGPA: Fresh Garlic Producers Association)’에서 미국 마늘업계를 대변하는데, 협회구성을 살펴보면, 미국 최대의 마늘유통회사 ‘크리스토퍼 랜치(Christopher Ranch)’의 영향권에 있고, 크리스토퍼 랜치는 하모니사의 최대 구매업체임이 드러난다.

게다가 중국의 저렴한 깐 마늘은 죄수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 밝혀진다. 죄수들은 매일 할당된 양의 마늘을 까야 하며, 하루 14~16시간에 이르는 노동을 견뎌야 한다. 더욱이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 속에서 가공된 마늘은 미국 전역으로 유통된다. 미국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하모니사는 타격을 입는다.

‘부패의 맛’에서는 우리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늘, 설탕, 꿀 등의 식재료가 유통되는데 불합리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기업간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비판한다. 소재 및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급망의 상단(upstream)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소비단계로 오면서 말끔하고 달콤한 상품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기본권과 같은 가장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법준수를 위반하였을 때 기업은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EU에서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급망의 환경, 안전, 인권 현황을 관리감독해야 함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법은 부패를 방지하고, 인권과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폭넓어지는 책임의 범위를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현장 의견 듣는다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12개 정부부처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관과 직접 만나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 및 법·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여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적용 및 해석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 직무 유형별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 별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7월 21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6118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매년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7일,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제점으로는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며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다.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7월 17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6035

국내외 동향

국내 첫 'ESG 기본법' 초안 공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본법'이 8월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이 ESG기본법의 핵심은 인센티브다. 기업이 ESG를 경영에 반영할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ESG기본법의 인센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협약체결'이다. ESG경영추진 목표, 목표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 등을 수립한 기업은 정부와 경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법 초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재계는 ESG기본법에 대해 ESG기본법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 동시에, ESG기본법이 자칫 ESG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 현황이다.

■ 해럴드 경제 2023년 7월 21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1000189>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월 20일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와 관련한 금융회사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책임 및 역할이 분명히 하고 실무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석원은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했으며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및 검토 등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 받아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보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에서 발생하는 보고 의무,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 보고 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며, 보고 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2년 이상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을 이 직위에 임명하도록 했다.

■ 한국경제 2023년 07월 20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2013351>

독일, 새로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ry) 감독기관 2024년 설립 목표

독일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계획된 법안에 따라 연방금융정보국(Federal Bureau of Financial Intelligence)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에 설립될 새 사무소는 자금세탁방지 및 제재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중앙 집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은 2022년,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global 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재무장관은 독일이 통제를 중앙집중화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며 당국의 기술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금융정보국은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REUTERS(로이터) 2023년 07월 24일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y-set-up-new-body-combat-money-laundering-2023-07-24/>

영국, 사기, 뇌물 수수 및 기타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영국 정부는 경제 범죄를 해결하고 기업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사기방지실패'에 대해 대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 범죄를 억제하며 소비자, 투자자, 기타 기업 및 납세자를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이 기업 이익을 위해 사기를 저지른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직원의 사기행각에 대해 기업은 범법행위를 억제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사기범죄 퇴치의 일환으로 검찰, 법률위원회 및 민간과 협력하여 '신원 확인 원칙(The identification doctrine,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사용되는 법률)'을 현대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입했다. 이는 50년만에 개혁으로, 기업이 '의사결정 및 지시(directing mind and will)'에 따른 범죄의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는데 사용되는 원칙이다. 현재까지는 1971년의 상원 판결에 따라 의사결정의 책임소지를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와 같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있어 현대 기업의 복잡한 관리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제안된 법안이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에 추가됨에 따라 고위 관리자의 폭넓은 의사결정권한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

- 영국 정부 2023년 06월 15일
<https://www.gov.uk/government/news/more-action-to-fight-fraud-bribery-and-other-economic-crime>
- Financier Worldwide Magazine 8월
<https://www.financierworldwide.com/crackdown-on-fraud-uk-proposes-new-fraud-offence>



공급망으로 윤리경영 확산

웹툰

윤리네컷





행사소식

2023 ESG Virtual Forum

윤리 및 준법경영 리더들에게 있어 ESG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비즈니스에서 ESG공시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해당 분야의 리더들과 소통하고 알아보는 포럼.

- 주최 에티스피어(ETHISPHERE)
일정 2023년 9월 26일(화)~27일(목)
참고 <https://events.ethisphere.com/e/esgforum2023#agenda>

The annual ESG Conference 2023

COVID-19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에서 회복, 우크라이나 전쟁이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완화,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해결, 디지털 및 녹색 전환 구현 등 EU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ESG와 경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 주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일정 2023년 9월 26일(화)
장소 벨기에, 브뤼셀
참고 <https://www.eesc.europa.eu/en/agenda/our-events/events/annual-esg-conference-2023>





퀴즈

Q. 다음 중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급업체와 계약 전 부패 관리시스템 평가
- ② 공급망 부패 위험에 대한 개선 계획 공개
- ③ 하청업체를 통한 급행료 지급
- ④ 부패위험 취약성, 고위험 파악

퀴즈 응모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도님, 송○옥님, 신○주님, 정○진님, 최○재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